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81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강명구·엄태영·배준영

박성민 · 서일준 · 정성국

서명옥 • 이성권 • 정점식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 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 률 제74조제7항 본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중 "32주" 를 "28주"로 한다.

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육아휴 직, 임신기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	⑦
내 또는 <u>32주</u> 이후에 있는 여	<u>28주</u>
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1. ~ 7. (생 략)
-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 13. (생략)

			_				

- 1. ~ 7. (현행과 같음)
-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 <u>신기 근로시간의 단축</u>-----

9. ~ 13. (현행과 같음)